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8
----------	------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의자 : 소병훈 · 김정우 · 인재근
서영교 · 최도자 · 김해영
윤종오 · 김삼화 · 신창현
심재권 · 박용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반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급여등에 대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임.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6조제2항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① 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u></p> <p class="list-item-l1">① <u>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u> 다만, 정 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p> <p class="list-item-l1">② <u>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p> <p class="list-item-l1">③ <u>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u></p>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생략) <u><신설></u>	<p>④ 공단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애플리할 수 없다.</p>
---	---